

제 호

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

1. 명 칭:

2. 대표자:

3. 소재지:

「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」 제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